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맞추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에 대하여 2006.1.12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요청이 있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과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코자 진료비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문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안제2조제1항)
- 「의료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로 변경 (안 제3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안제3조제2항제7호)

검토의견

-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2.8 제정되었고, 2001.5.24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2조 제1항 및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 등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를 행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제대군인은 본인에 한하여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지방단체에 부담지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유가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가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 본인에 대한 전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50%이외의 부분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을 보훈청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 유가족에 대한 면제 있어서는 국가 또는 보훈병원의 면제 비율인 60% 범위안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보훈병원 및 국가의료기관 만으로는 부족한 형편이고, 국가유공자등이 우리의 국민이며,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김 찬 재

#별표: 1.영등포구 국가유공자등의 현황.
2.관련법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들의 현황

2006.1.31현재

(단위:명)

구 분	총 계			65세미만			65세이상		
	계	본인	유족	소계	본인	유족	소계	본인	유족
총 계	6,902	5,904	998	3,116	2,681	435	3,786	3,223	563
독립유공자	65	3	62	15	-	15	50	3	47
국가유공자	2,394	1,460	934	1,110	692	418	1,284	768	516
5.18유공자	30	28	2	27	25	2	3	3	-
고엽제 후유의증	225	225	-	174	174	-	51	51	-
특수임무 수행자	17	17	-	14	14	-	3	3	-
참전유공자	3,801	3,801	-	1,509	1,509	-	2,292	2,292	-
장기복무 제대군인	370	370	-	267	267	-	103	103	-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 등)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산부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법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 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